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1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윤영석 · 이상희 · 백종헌
서천호 · 박성민 · 박덕흠
정동만 · 조경태 · 김미애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국가의 양로시설에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양로지원을”을 “양로·요양지원을”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중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로지원과”를 “양로·요양지원과”로, “아동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로지원과”를 “양로·요양지원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
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탁) ① -----양로
· 요양지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아
동복지시설-----
-----.

② 양로·요양지원과-----

--.